# 예 산 총 칙

200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|---|---|
| 합 계 | 420,860,526 | 12,625,816 |
| 일반회계 | 377,716,544 | 11,331,496 |
| 일반회계 | 377,716,544 | 11,331,496 |
| 기타특별회계 | 43,143,982 | 1,294,319 |
|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| 129,574 | 3,887 |
|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| 13,966,566 | 418,997 |
| 수질개선 특별회계 | 60,972 | 1,829 |
|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| 3,370,000 | 101,100 |
| 주차장 특별회계 | 288,900 | 8,667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| 13,792,970 | 413,789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| 505,000 | 15,150 |
|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| 11,030,000 | 330,90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사업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803,886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